

의안번호	2208860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7.2.
추계번호	25B145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의 시행	의무규정
		사업주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22조(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고령자의 고용안정 의무)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¹⁾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 연장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년 연장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 및 규모는 정년연장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규모와 고용인원의 인적 구성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됨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용 규모와 인적 구성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정 변화의 발생 여부와 방향성 및 규모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22조(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치²⁾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신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1)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2027년 63세 이상, 2028년~2032년 64세 이상, 2033년 이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

2) 개정안에 규정된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의 시행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며,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
 - 또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